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나43310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재판경과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나43310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4. 29 선고 2021가단636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C

변론종결 2022. 9. 22.

판결 선고 2022. 10. 27.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4. 29. 선고 2021가단636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① 제1심판결 제2쪽 제6행의 '약정하였다'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② 제1심판결 제2쪽 제9 내지 11행을 「다. 한편, 당시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은 연 24%이고{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21. 4. 6. 대통령령 제31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 최고이자율에 따른 차용원리금을 계산하면 별지 변제충당표 기재 중 차입금과 지연이자를 합한 397,239,263원(=원금 340,000,000원 + 이자 57,239,263원1))이다.」로 고치며,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D과 공모하여 원고의 이익창출을 위해 지급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피고로부터 340,000,000원을 받으면서 그에 따른 수수료 내지는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약정서에 원금 390,000,000원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157,500,000원에 대하여 '차용이자'라고 기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으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약정 중 차용이자 부분은 성질상 원래 채권자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이 아니므로 이자제한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이자제한법을 적용할 수 없고, 그 외에도 위 법 제7조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4에 정한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이 사건 약정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약정 중 차용이자 부분은 채권자인 피고가 차용금과 관련하여 받은 것으로서 이자로 간주되므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피고가 다른 법률에 따라 금융 및 대부업 인가 등을 마쳤다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4에서 정한 미등록 대부업자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진철

판사이승원

판사이주현

별지

1) 지연이자 계산에서 '원 미만'은 반올림하였다.